

업무제휴계약서

TK트래블 (이하 "광고주"라 함)와 (주)티몬(이하 "회사"라 함)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업무교류 및 제휴에 따른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며 교류와 협력이 당사자간의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칭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의 목적은 "회사"가 "광고주"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이하 "상품 등"이라 함)에 대한 홍보, 마케팅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광고주"와 "회사" 간의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업무제휴내용 및 범위)

- ① 본 계약에 의한 업무제휴의 내용 및 범위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이하 "웹사이트 등"이라 함)에 "광고주"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회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광고주"는 판매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회사"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전항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는 "광고주"와 협의하여 "광고주"의 "상품 등"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디지털 증권(이하 "티켓"이라 함)의 판매 및 홍보를 진행한다.
- ③ "광고주"가 "회사"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등"의 구체적 내용은 추후 서면(전자메일 포함)으로 정한다.

제 3 조 (계약 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 4 조 ("광고주"의 권리와 의무)

- ① "광고주"는 계약기간 동안 제휴업무 내용을 "광고주"의 임직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회사"의 고객이 "광고주"의 "상품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고객불만(claim) 발생 시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광고주"가 "회사"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등"(가격, 상품내용 등)이 관련법령 또는 소비자보호지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기관의 지침에 위반하여 부적절하다고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회사"는 "광고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주"는 즉시 "회사"와 합의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광고주"는 "회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제휴에 따른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프로모션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사"는 본 계약 및 프로모션 계약에 따라 "광고주"의 "상품 등"의 각종 조건과 내용을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며, 제휴업무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
- ② "회사"는 "광고주"의 "상품 등"을 "웹사이트 등"에 홍보, 노출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는 "광고주"와 협의하여 서면(전자메일 포함)으로 정한다.
- ③ "웹사이트 등"에 노출하는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콘텐츠 구성, 우수상품의 선별 등은 "광고주"와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④ "회사"가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고객불만을 접수하는 경우 "광고주"와 협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제 6 조 (판매 활성화)

- ① "회사"는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할인쿠폰 정책을 포함한 제반 할인정책을 "광고주"의 동의 ("광고주"로부터의 승인 혹은 "광고주"와 "회사"간 합의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하에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는 양 당사자의 협의로 정한다.
- ② 구매할인쿠폰은 구매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티켓"을 구매할 때 쿠폰에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티켓" 판매가격이 할인 될 수 있는 "회사" 전용의 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 쿠폰을 말하며, 즉시할인쿠폰, 딜 전용쿠폰, 장바구니쿠폰을 통칭한다. "회사"는 "광고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된 "티켓"가격으로 판매를 대행할 수 있으며, "광고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당해 거래는 취소 처리된다.
- ③ 즉시할인쿠폰은 "회사"가 판매대행하는 "광고주"의 개별 "티켓"에 대한 게시 화면에서 즉시 적용됨으로써 즉시할인쿠폰이 적용된 할인액 및 할인 후 "티켓"금액으로 구매고객이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 전용의 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 쿠폰을 말한다.
- ④ 딜 전용쿠폰은 "회사"가 판매대행하는 "광고주"의 개별 "티켓"을 구매고객이 주문할 때 쿠폰에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티켓" 판매가격을 할인하여 주문할 수 있는 "회사" 전용의 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 쿠폰을 말한다.
- ⑤ 장바구니쿠폰은 "회사"가 판매대행하는 "광고주"의 여러 "티켓"을 구매고객이 묶음으로 주문할 때 쿠폰에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티켓" 판매가격을 할인(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액을 쿠폰적용대상 상품별 할인 전 가격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 상품별 할인액으로 함)하여 주문할 수 있는 "회사" 전용의 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 쿠폰을 말한다.
- ⑥ 구매고객의 구매대금 결제 내역이 파트너센터 시스템에 반영된 후 "광고주"가 판매된 "티켓"

에 대한 구매할인쿠폰의 적용을 동의하지 않는 의사표시(파트너센터 상 미동의)를 하는 경우, 해당 판매 건은 취소되고 입금된 금액은 구매고객에게 환불된다.

제 7 조 (판매대행수수료)

- ① 판매대행수수료는 "광고주"가 본 계약에 따라 "회사"의 판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대가로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회사"는 판매 활성화를 위해 "티켓"에 대한 판매대행수수료를 할인할 수 있다.
- ② 구매할인쿠폰이 적용되고, "광고주"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판매하는 "티켓"의 판매가격이 할인되는 경우, 해당 "티켓"에 대해서는 할인 전 티켓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수료 금액에서 구매할인쿠폰 적용으로 인한 "티켓" 판매가격 할인액("회사" 부담 할인액을 말하며 "광고주" 부담 할인액은 해당하지 않음)을 차감한 가액으로 판매대행 수수료를 산정하고 동 산정된 금액을 "광고주"에게 판매대행 서비스 이용대가로서 청구한다.
- ③ "광고주"와 "회사"는 합의를 통해 "티켓"의 판매대행수수료를 결정하고, "회사"의 파트너페이지 또는 서면(전자메일포함)으로 "광고주"에게 전달한다.
- ④ "회사"는 "티켓" 판매금액을 아래의 정산방법으로 "광고주"에게 지급한다. 단, 대금지급 이후에 사용처리 된 "티켓"의 취소 또는 환불 발생 시, "회사"는 "광고주"에게 취소 또는 환불로 발생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광고주"의 다른 딜에서 상계처리를 할 수 있다.
-표준정산 : "티켓"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8영업일째 되는 날(사용처리 된 "티켓" 100% 지급)
- ⑤ "광고주"와 "회사"는 개별 딜의 정산방법을 별도로 결정 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서면합의(전자메일포함) 또는 파트너센터 공지를 통해 안내 하도록 한다.
- ⑥ "회사"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판매대행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서면합의(전자메일포함) 또는 파트너센터를 통해 "광고주"에게 전달한다.

제 8 조 (마케팅 협조)

- ① "광고주"는 본 계약 및 프로모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협의하여 "광고주" 내부에 전담 상담 조직과 전화 회선 등 관련 인적·물적 시설을 충분히 확보,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광고주"는 "회사"가 업무제휴를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 및 콘텐츠 등의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

제 9 조 (계약의 해지)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발생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요청한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거래정지, 강제집행 또는 파산신청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회사"는 본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③ 본 조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손해배상)

- ① "광고주"와 "회사"는 본 계약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한 모든 손해(변호사 보수 등의 방어비용 포함)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광고주"가 "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광고주"에게 지급할 대금으로 즉시 상계하거나 다음 차수 정산 시 차감할 수 있다.

제 11 조 (준수사항)

- ① "광고주"는 "회사"의 고객에 대하여 "상품 등"의 제공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단, 노사분규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와 사전 합의를 통해 서비스제공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② "광고주"와 "회사"는 자신의 소속 임직원(정규직 또는 계약직을 불문하며, "광고주" 또는 "회사"가 사용하는 외부업체 직원 포함)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민·형사상의 피해(금전사고 포함)를 끼친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 ③ "광고주"는 "회사"의 고객이 "상품 등"을 구매한 후 "광고주"를 통하여 예약을 확정하였거나 사용을 완료한 경우 이에 대해 파트너 페이지 상 즉시 '사용처리'를 하여야 한다. "광고주"가 '사용처리'를 하지 않아 환불처리 된 "상품 등"에 대한 대금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회사"는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 ④ "광고주"는 "상품 등"을 "티켓"이 없이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거나, "회사"의 고객을 "광고주"의 자체고객으로 유도하는 행위 및 고객의 정상적인 "티켓" 사용을 방해 또는 거부하는 등 "회사" 및/또는 고객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주"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로 인한 "회사"의 제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회사"는 별도의 최고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광고주"와 협의하여 "광고주"가 고객에게 해피콜을 진행하는 "상품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고객이 "상품 등"을 구매한 날로부터 3영업일내에 해피콜을 진행한 후 예약을 확정된 고객의 "티켓"을 파트너페이지 상 즉시 '사용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 12 조 (판매 취소)

- ① "상품 등"의 판매되기 전 "광고주"의 사유로 인해 판매가 취소되는 경우, "광고주"는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 등 프로모션 준비과정에 소요된 비용 명목으로 위약금 1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한다.
- ② "상품 등"의 판매기간 동안 "광고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판매가 취소되는 경우, "광고주"는 위약금 5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한다.

제 13 조 (비밀유지)

- ① "광고주"와 "회사"는 본 계약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상호 제휴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상호 사전 서면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제 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상호간의 광고, 마케팅, 섭외 및 기획 부분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에 대한 비밀준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법원, 수사기관 또는 정부기관이 요청 시 "광고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광고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광고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하다.

제 14 조 (회사의 상호, 상표, 마크 등의 사용)

- ① "광고주"와 "회사"는 사전에 서면 승인한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상호, 상표, 마크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 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② "광고주"와 "회사"는 본 계약이 해지되면 상대방의 상호, 상표 및 의장권 등 영업표장 및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 15 조 (보증 및 지식재산권)

- ① "광고주"와 "회사"는 본 계약 및/또는 프로모션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제3자가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소송, 분쟁, 클레임 등을 제기한 경우 "광고주" 또는 "회사"는 상대방을 방어하고 면책하며 상대방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반 비용을 전보한다.
- ② 본 계약 및/또는 프로모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회사"에 의하여 창출된 제반 결과물은 "회사"에게 귀속하며 "광고주"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기 결과물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이용케 하지 못한다.
- ③ "광고주"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거나, 프로모션에 대하여 정부기관(수사기관, 소비자 단체 포함)의 조사가 시작되거나 출석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티켓 판매기간"이 조정되거나 "티켓"의 판매가

중지될 수 있다.

제 16 조 (개인정보의 보호)

- ① "광고주"와 "회사"는 제휴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고객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동 정보를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객이 동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광고주"와 "회사"가 전 항을 위배할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17 조 (양도금지 등)

"광고주"와 "회사"는 본 계약상의 권리 및/또는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 18 조 (계약의 변경)

제휴업무 내용을 포함한 본 계약의 변경은 "광고주"와 "회사"의 사전 서면 합의하에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의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광고주"는 "회사"의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하거나 "회사"로 하여금 충분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 19 조 (공정거래 준수 등)

"광고주"와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광고주"와 "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 경제상의 이익 또는 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광고주"는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하고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의 관련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본 조의 위반 당사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상대방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20 조 (기타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양 당사자간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광고주"와 "회사"가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2020년 10 월 12 일

"광고주"

상호: TK트래블

주소: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17
문정빌딩 302호

대표자: 강 일 구



"회사"

상호: (주)티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38
동일타워 1층

대표이사: 이 진 원

